

공기청정 에어컨디셔너 단체품질인증 운영규정 (CAC마크)



표준번호 : KACA-CAC-2011 공기청정 에어컨디셔너



한국공기청정협회
KOREA AIR CLEANING ASSOCIATION

공기청정 에어컨디셔너 단체품질인증 운영규정

(2018년 01월 01일 개정)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한국공기청정협회(이하“협회“이라 한다)의 정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공기청정기능을 가진 실내용 에어컨디셔너의 공기청정장치에 대한 자율적인 품질관리를 행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제품의 품질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대상)

본 인증시험은 KS C 9306 또는 전기용품안전인증을 취득한 제품에 대하여 일반 가정 또는 사무실, 학교 교실 등에 설치하는 에어컨에 부착된 실내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집진 및 탈취기능을 가지는 공기청정 에어컨디셔너에 대하여 적용한다.(단, 공기청정기능은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고 단독으로 운전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)

- ① 국내 공기청정 에어컨디셔너 생산업체의 제품이나 수입하는 공기청정 에어컨디셔너로 한다.
- ② 제①항 이외에도 한국공기청정협회장(이하“협회장“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라 인증시험을 할 수 있다.

제3조 (용어의 정의)

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① 공기청정 에어컨디셔너 : 에어컨의 부가기능으로 집진 성능 및 탈취 성능을 가진 에어컨을 말하며, 에어컨의 주기능인 온습도 조절기능을 갖춘 기기로 크게 기계식, 전기식, 복합식 구분할 수 있으며, 기계식은 다시 건식과 습식인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.
- ② 인증마크 : 인증을 취득한 업체에서 해당제품이 인증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인증표시.
- ③ 인증필증 : 공기청정 에어컨디셔너 단체품질인증 제품에 부착하는 인증마크는 인증필증이라 한다.
- ④ 랜덤 샘플링 : 시험체 선정의 편차를 없애기 위해 모집단의 시험체중 무작위로 선정하는 방법.

제4조 (인증시험 및 인증기준)

- ① 인증시험의 항목과 인증기준은 [별표 1] 인증심사기준에 따른다.

제5조 (인증신청 및 인증시험의 처리기간)

인증신청 및 인증시험을 위한 처리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단체표준인증은 항시 신청이 가능하며, 신청서와 첨부서류 일체를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.
2. 협회는 신청업체의 서류를 검토하여 7일 이내 적합 여부를 평가하여 통보 해야 하며, 적합 시 심의위원회에 상정 가능한 일정을 통보해야 한다.
3. 협회는 공장심사(시험체선정) 3일전까지 심사계획 및 일정을 통보해야 한다. 다만, 제품생산 일정 및 기타 사유로 신청업체와 협회는 상호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 할 수 있다.
4. 시험 기간은 시험체선정일로부터 45일 이내
5. 각 처리기간에서 법정 공휴일은 삽입하지 아니한다.
6. 협회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기간을 초과할 경우 신청자에게 지연사유를 사전에 통보한다.

제6조 (인증시험방법)

인증시험방법은 한국공기청정협회 표준 KACA-CAC-2011 공기청정 에어컨디셔너에 따른다.

제7조 (인증절차)

인증절차는 [별표 2] 에 따른다.

제8조 (인증 신청 서류 접수)

- ① 인증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자(이하 “신청자”라 한다.)는 [별지 1]서식에 의해 단체표준인증 신청서와 [별첨 1] 단체표준인증 첨부서류 에 따른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협회에 신청하여야 한다.
- ② 협회에서는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류가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하며, 그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접수를 받고, 부적합일 경우 단체표준 업무규정 제16조에 따라 신청을 반려한다.

제9조 (파생제품)

- ① 인증제품의 파생제품에 대해서도 인증마크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신청자는 [별지 1-1]서식에 의해 파생 모델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협회에 신청하여야 한다.
- ② 정의 : 인증제품과 구조, 부품, 모양 및 크기는 똑같으나 색상 및 판매원(처)이 다른 경우
- ③ 범위
 1. 파생제품 인증 : 색상 및 제품(모델)명이 다른 경우
 2. 파생제품 확인시험 : 심의위원회에서 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
 3. 파생제품 불인증 : 1항과 2항에 해당되지 않았을 경우
- ④ 파생제품에 대한 인증 및 시험여부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한다.
- ⑤ 파생제품의 확인시험은 생산현장에서 시험체를 선정 하여 시험하며, 시험결과의 오차범위는 [표1. 재시험 오차범위]를 따른다.
- ⑥ 파생제품 확인시험의 시험비용은 별도로 부과된다.
- ⑦ 파생제품의 인증 시 인증 필증을 부착하여야 한다.

시험항목	단위	오차범위	비고
청정화능력	CMM	-10% 이내	단, 시험결과가 오차범위내일 경우라도 인증기준에 미달될 때는 제외한다.
오존발생농도	ppm	+10% 이내	

[표1. 재시험 오차범위]

제10조 (수수료)

- ① 시험 및 인증 수수료는 [별표 4] 에 따른다.
- ② 시험 및 인증수수료는 협회 규정에 따르며, 시험비용은 인증시험기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.

제11조 (인증서 교부 및 인증마크의 사용 등)

- ① 시험성적서 교부 후 업체는 협회와 인증계약을 체결하고 [별지 2]서식 인증서 신청서를 협회로 발송한다.
- ② 협회에서는 인증계약 체결 및 인증서 신청서를 접수 후 [별지 3]서식 단체표준인증서를 발급한다.
- ③ 인증업체는 인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품에 인증필증을 부착해야 하며, 신청은 [별지 2-1]서식 인증 필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협회로 발송한다.
- ④ 협회는 인증필증 신청서를 접수 후 신청업체에게 7일 이내 인증필증을 발급 하여야 한다.
- ⑤ 인증업체는 인증마크를 인증제품 및 서류 또는 홍보물 등에 인증업체 임을 표시할 수 있다.
- ⑥ 인증마크의 사용 및 서류, 홍보자료 등에 인증업체임을 표시를 하거나 이를 홍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[별표 5] 의 표시사항에 따른다.

제12조 (인증 계약 기간)

- ① 협회는 인증업체와 **단체표준 업무규정 [별지 19]**서식에 따라 인증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.
- ②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.

제13조 (표시사항)

- ① 인증 받은 제품, 포장 등에는 **[별표 3]** 의 표시사항에 맞게 표시할 수 있다.
- ② **1항**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할 때에는 소비자가 인식하기 쉽도록 보이기 쉬운 곳에 명확한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.
- ③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공공질서를 해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표시는 금지한다.

제14조 (시판품 조사)

- ① 협회에서는 인증업체가 인증기준을 지속적으로 만족시키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**시판품 조사**를 실시 할 수 있다.
- ② 시험을 하기 위하여 제품을 수거할 때는 **[별지 4]**서식의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
- ③ 수거된 제품시험의 수수료는 협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.
- ④ **1항**에 의한 시험결과에 부적합 시 업체에 그 결과를 통보하고, 업체는 **단체표준 업무규정 [별표 3]** 처분기준에 따라 재시험을 신청 할 수 있다.
- ⑤ 재시험 신청시 발생하는 모든 수수료는 인증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한다.
- ⑥ **시판품조사 선정기준**은 **단체표준 운영규정 내규**에 따른다.

제15조 (부칙)

이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다른 규정에 접촉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인증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(업무규정) 공기청정 에어컨디셔너 단체품질인증제도의 업무규정은 한국공기청정협회 단체표준인증 업무규정을 따른다.